

부속서 I

파나마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파나마의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파나마의 기준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5조(현지주재)
- 라. 제9.9조(이행요건)
-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파나마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이 협정의 목적상, 파나마는 다음을 양해한다.

파나마의 관할권 수역에서의 어업 및 관련 활동은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의무에 대하여 부속서 I 및 II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 | |
|--------------|---|
| 1. 분야 | 유통서비스 |
| 하위분야 | 소매 판매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 제293조 법률 제5호(2007.1.11) 제5조 및 제10조 행정부령 제26호(2007.7.12) 제12조 |
| 유보내용 | <p><u>투자</u></p> <p>1. 다음의 인만이 파나마에서 소매업을 소유할 수 있다.</p> <p>가. 출생에 의한 파나마 국민</p> <p>나. 1972년 헌법 발효일 기준 귀화하였고 파나마 국민과 결혼하였거나 파나마 국민과 자녀를 둔 자연인</p> <p>다. 귀화에 의한 파나마 인으로 귀화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나호의 설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p> <p>라. 파나마 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1972년 헌법 발효일 기준 국내법인에 따라 파나마에서 소매업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인 자연인, 그리고</p> <p>마. 파나마 또는 그 밖의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1972년 헌법 제293조제5항에 규정된 대로, 가호, 나호, 다호 또는 라호에 기술된 자연인이 소유한 법인</p> <p>2. 다만, 소매업을 소유하도록 권한 받지 아니한 외국 국민은 해당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참여할 수 있다.</p> <p>3. 소매업의 고위경영진 및 이사는 소매업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국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

| | |
|--------------|---|
| 2. 분야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 제290조 및 제291조 |
| 유보내용 | <p><u>투자</u></p> <p>1. 외국 정부, 외국 공무원 또는 외국 공기업은 대사관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파나마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p> <p>2.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국민이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파나마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파나마 국경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p> |

| | |
|--------------|--|
| 3. 분야 | 공공설비서비스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 제285조 |
| 유보내용 | <p><u>투자</u></p> <p>파나마에서 운영되는 공공설비에 종사하는 민간기업 자본의 다수는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파나마인이 소유한다.</p> |

| | |
|-------|---|
| 4. 분야 | 모든 분야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내국민 대우(제10.2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 제322조 |
| 유보내용 |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나마 운하관리청의 계약직은 외국 국민보다 파나마 국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해당 직위를 충원하기 어렵고 자격을 갖춘 파나마 국민을 고용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고갈되었으며 운하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나마 국민 대신 외국 국민을 고용할 수 있다. 파나마 운하관리청 채용 직위의 유일한 지원자가 외국 국민인 경우, 파나마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 국민 또는 파나마에서 10년 동안 연속으로 거주한 외국 국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2.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 운하관리청의 이사가 될 수 있다. |

| | |
|--------------|---|
| 5. 분야 | 예술 활동 |
| 하위분야 |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연주자 및 예술가)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10호(1974.1.8) 제1조 행정부령 제38호(1985.8.12) 제1조 및 제2조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외국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외국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이 공연하는 각 장소에서 공연하기 위하여 파나마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외국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의 계약 기간 동안 존재한다. 이 파나마 오케스트라 또는 음악그룹은 각 공연마다 최소 미화 1,000달러를 받아야 한다. 각 단원은 이 금액 중 미화 60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p> <p>2. 외국 예술가와 함께 공연하는 파나마 예술가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용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된 매체와 관계없이 행사와 관련된 판촉, 홍보 및 광고에 적용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p> <p>3. 판촉을 위하여 외국 예술가를 고용하거나 외국 예술가의 서비스 또는 작품을 자선기부 또는 교환하는 행위는 파나마 예술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파나마 예술가를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승인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조수수료 및 회비 납부의 목적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및 업무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의 평가를 위하여 그 고용건을 제출하여야 한다.</p> |

| | |
|--------------|---|
| 6. 분야 | 통신 |
| 하위분야 |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파나마 공화국의 정치 헌법 제285조 법률 제24호(1999.6.30) 제14조 및 제25조 행정부령 제189호(1999.8.13) 제152조 및 제161조 |
| 유보내용 |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 내에서 공영 라디오 또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는 자연인 또는 기업에게 부여될 수 있다. 자연인의 경우, 양 허권자는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양허권자 주식의 최소 65퍼센트 이상을 파나마 국민이 소유하여야 한다.</p> <p>2. 공영 라디오 또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기업의 각 고위 관리자 및 이사는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p>3.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공기업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영 라디오 또는 공영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 할 수 없다.</p> <p>4. 공영 라디오 또는 공영 텔레비전 서비스의 양허권자는 공공서비스 청이 발행한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아나운서의 발표를 포함하는 파나마 내에서 시작된 광고를 방송할 수 없다. 이는 파나마 국민 또는 파나마 국민에게 상호 권리를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서만 취득될 수 있다.</p> |

| | |
|-------|---|
| 7. 분야 | 통신 |
| 하위분야 | 통신서비스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31호(1996.2.8) 제21조 |
| 유보내용 | <p><u>투자</u></p> <p>외국 정부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 또는 외국 정부를 파트너로 두고 있는 기업은 파나마의 영역에서 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p> |

| | |
|--------------|--|
| 8. 분야 | 교육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파나마 공화국의 정치 헌법 제100조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의 영역에서 파나마 역사 및 시민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p> |

| | |
|--------------|--|
| 9. 분야 | 전기에너지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6호(1997.2.3) 제32조, 제45조 및 제46조 |
| 유보내용 |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 영역 내의 송전서비스는 파나마 정부만이 공급할 수 있다. 파나마 영역 내의 배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청이 부여한 허가에 따라 15년간 3개의 기업에서 공급될 것이다. 전력회사 이사회 구성원은 파나마 국민일 것이 요구되며, 국가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을 51퍼센트 이상 소유한다. |

| | |
|---------------|--|
| 10. 분야 | 원유, 탄화수소 및 천연가스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이행요건(제9.9조) 현지주재(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8호(1987.6.16) 제2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71조 |
| 유보내용 |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계약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 파나마 공화국에서 설립 또는 지점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p> <p>2.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다음의 경우 상품 또는 계약 서비스를 외국에서 획득할 수 있다.</p> <p> 가. 그 상품 또는 서비스가 파나마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p> <p> 나. 파나마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통상산업부의 탄화수소국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그 산업에서 요구되는 일반 규격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p> |

| | |
|---------------|--|
| 11. 분야 | 광산 운영 |
| 하위분야 | 비금속, 금속(귀중한 광물 제외) 광물, 귀중한 충적 광물, 귀중한 비충적 광물, 연료 광물(탄화수소 제외) 및 예비 광물의 추출 및 관련 서비스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령 제23호(1963.8.22) 제4조, 제5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5조 법률 제3호(1988.1.28) 제11조 법령 제30호(2011.2) 제1조 |
| 유보내용 |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외국 정부, 외국 공기업 또는 외국 정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참여가 있는 법인은 다음을 할 수 없다.</p> <p> 가. 광업 허가를 획득하는 것</p> <p> 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광업 운영의 계약자가 되는 것</p> <p> 다. 광업 허가를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 또는</p> <p> 라. 내각 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파나마 공화국 대통령령을 통하여 사전 및 특별 허가 없이 장비 또는 자재를 파나마 내 광업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지 또는 보유하는 것</p> <p>2. 파나마는 노동법에 따라 광업 운영의 모든 단계의 직위에 대하여 파나마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p> <p>3. 광업 허가 보유자와 광업 운영에 종사하는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외국 국민을 경영, 과학 또는 기술 전문가로 고용할 수 있다.</p> <p> 가. 광업 운영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외국 국민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p> <p> 나. 외국 국민이 피고용인 수의 25퍼센트 미만을 구성하고 외국 국민이 받는 보수가 총 보수의 25퍼센트 미만인 경우</p> <p> 1) 광업 허가 보유자의 경우, 추출, 혜택 또는 운송 허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업 운영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p> <p> 2) 계약자의 경우, 광업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p> |

4. 광업자원 총국은 외국인이 광업에 채용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할 것이다.

5. A급 건물의 탐사 또는 채굴을 위한 허가만을 보유한 인을 제외한 모든 양허권자는 미숙련 노동자 및 반숙련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광업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파나마의 광물자원국이 감독하는 파나마인 직원들에게 비용,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 |
|---------------|--|
| 12. 분야 | 건설에 사용되는 비금속 광물, 세라믹, 내화성 및 금속재료의 탐사 및 개발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109호(1973.10.8) 제3조 법률 제32호(1996.2.9) 제7조 |
| 유보내용 | <p><u>투자</u></p> <p>1. 파나마 국민 또는 파나마 기업만이 석회암, 모래, 원석, 침전 석회암, 점토, 자갈, 파편, 장석, 석고 반죽 및 그 밖의 비금속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계약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p> <p>2. 다음은 제1항에 언급된 계약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 운영하거나 그러한 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p> <p> 가. 외국정부 또는 공기업, 또는</p> <p> 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그 행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인</p> |

| | |
|--------|--|
| 13. 분야 | 어업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8호 파나마 공화국 재정법(1956.1.27) 제286조 법률 제20호(1994.8.11) 법령 제17호(1959.7.9) 제5조 및 제6조 법령 제116호(1980.11.26) 제1조 행정부령 제124호(1990.11.8) 제3조 행정결의안 제3호(2004.1.7) 행정부령 제239호(2010.7.20) 제3조 |
| 유보내용 | <p><u>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 영역에서 잡힌 파나마 어류를 소비를 위하여 판매할 수 있다. 파나마인이 소유한 선박만이 연안(수작업) 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파나마인이 최소 75페센트를 소유하고 파나마 영역 내에서 국제 참다랑어 무역에 종사하는 파나마 국적 선박만이 특혜 요금을 위한 참다랑어 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파나마에서 건조된 선박만이 파나마 영역에서 상업적 또는 산업적 새우 어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 | |
|---------------|---|
| 14. 분야 | 사업서비스 |
| 하위분야 | 민간보안기관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행정부령 제21호(1992.1.31) 제4조 및 제10조 행정부령 제22호(1992.1.31) 제1조 |
| 유보내용 |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회사의 소유자는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인은 이 부속서에 기술된 소매업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 영역에서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자의 직위를 가질 수 있다. 파나마 영역에서 보안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 국민은 파나마 정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

| | |
|---------------|--|
| 15. 분야 | 광고서비스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행정부령 제189호(1999.8.13) 제152조 행정부령 제273호(1999.11.17) 제1조, 행정부령 제641호(2006.12.27) 제1조에 의하여 개정 |
| 유보내용 |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및 영화를 위한 광고 방송 중 그 음성 대역이 아나운서 면허를 소지한 파나마인에 의하여 녹음된 광고의 사용은 전송, 상영 및 사용 기간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

| | |
|---------------|---|
| 16. 분야 | 해상운송 |
| 하위분야 | 도선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결의안 J.D 제020-2003호 제44조 |
| 유보내용 |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 국민만이 견습 도선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운하 또는 항구 도선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

| | |
|---------------|--|
| 17. 분야 | 해상 운송 서비스 및 해상 운송 보조서비스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령 제8호(1998.2.26) 제4조, 제15조 및 제18조 법률 제56호(2008) 제43조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계약 서비스 공급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나마인이 등록한 국제 서비스 전용 선박의 소유자는 파나마 국민, 파나마 국민의 배우자 및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파나마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p> <p>2. 조선소 및 파나마 해운회사 협회는 파나마 국민, 파나마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파나마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교육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위한 장학금 및 시설을 제공하도록 한다.</p> <p>3. 파나마에서 운영되는 외국인력회사는 모든 사법 · 사법외 및 행정 업무에서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파나마 국민을 지정하여야 한다.</p> <p>4. 파나마에 설립된 직업알선기관은 되도록이면 파나마인 선원 또는 파나마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p> <p>5. 파나마 영해에서 운영하는 파나마 해상 운송 보조서비스 선박의 선원 수의 90퍼센트 이상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

| | |
|---------------|--|
| 18. 분야 | 운송서비스 |
| 하위분야 | 항공 운송 서비스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21호(2003.1.29) 제79조, 행정부령 제542호(2005.11.24)에 의하여 규정 |
| 유보내용 | <p><u>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나마에 운영 본부를 두고 있는 파나마 인만이 파나마에서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용 허가증을 보유할 수 있다. 제1항에 언급된 허가증 취득을 위하여, 파나마 기업은 그 기업의 실질적 자산 및 실효적 지배가 파나마 국민의 소유라는 것을 민간항공청에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최소 51퍼센트는 파나마 국민이 소유한 기명주식이어야 한다. 국내 운송에 있어서, 제2항에 명시된 비율은 최소 60퍼센트이다. 제1항에 언급된 허가증이 유효한 동안, 허가증 소유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파나마 국민에 의한 최소 소유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19. 분야 | 특수 항공 서비스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21호(2003.1.29) 제43조 및 제45조, 법률 제89호(2010.12.1) 제13조에 의하여 개정 법률 제89호(2010.12.1) 제2조 및 제3조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 항공사는 파나마인 조종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89호(2010) 제2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항공사는 외국인 조종사를 기술자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파나마 공화국의 해당 항공사의 총 직원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p> <p>2. 파나마 국민만이 항공기술담당자 및 기술승무원으로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파나마 국민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인력개발부는 요구되는 대로 항공사 전체 직원의 15퍼센트까지의 외국 인력이 그러한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p> |

| | |
|---------------|--|
| 20. 분야 | 출판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67호(1978.9.19) 제9조 |
| 유보내용 | <p><u>투자</u></p> <p>1. 다음은 신문이나 잡지를 포함한 파나마 정보통신 대중매체의 일부인 인쇄물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된다.</p> <p>가. 파나마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100퍼센트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고</p> <p>나. 출판인, 편집장, 부회장 및 부관리자를 포함하는 기업 관리자는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

| | |
|---------------|--|
| 21. 분야 | 사업서비스 |
| 하위분야 | 전문직서비스 – 법률서비스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9호(1984.4.18) 제3조 및 제16조 |
| 유보내용 |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법원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파나마 국민만이 파나마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파나마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이 법률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정의 명확한 조건상 허용된 경우, 외국 국민인 변호사는 국제법 및 해당 변호사가 법률 실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관할권의 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외국 변호사는 제4항가호에 열거된 기관에 대해서는 파나마 영역에서 변호를 제공할 수 없다. 4. 이 유보의 목적상, 파나마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민사, 형사, 노동, 아동복지, 선거, 행정 또는 해상 관련 법정에서의 법률 대리인 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 자문 제공 다. 법률 문서 및 계약서 작성, 그리고 라. 파나마에서 법률 실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모든 활동 |

| | |
|--------|--|
| 22. 분야 | 사업서비스 |
| 하위분야 | 전문직서비스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p>법률 제57호(1978.9)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공인회계사</p> <p>법률 제7호(1981.4.14) 제3조, 경제학자</p> <p>결의안 제168호(1988.7.25)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기술경제협의체에 관한 규정 승인</p> <p>법률 제67호(1978.9.19)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언론인</p> <p>법률 제21호(2005.6.16) 제4조, 홍보 전문가</p> <p>법률 제55호(2002.12.3) 제5조, 심리학 관련 규정</p> <p>법률 제51호(2005.12.28) 제55조, 전문가 및 보건의료기사</p> <p>법률 제1호(1996.1.3) 제2조 및 제3조, 사회학</p> <p>법률 제17호(1981.7.23) 제3조, 사회복지사</p> <p>법률 제20호(1984.10.9) 제3조, 도서관학 전문가 관련 규정</p> <p>법률 제59호(1998.7.31) 제2141조, 행정법 제17편, 제2140조, 제2141조 및 제2142조의 명칭 개정 및 공인 번역가에 관한 법률 제33호(1984) 제13조 폐지</p> <p>제8권, 승무원을 제외한 항공 직원의 면허 취득에 관한 제JD-012호 결의안(2009.2.20) 및 제JD-046호 결의안(2010.11.25)으로부터 채택</p> <p>법령 제1호(2008) 제44조, 관세사 면허 관련</p> <p>행정명령 제6호(1999.7.8) 제3조 및 제4조, 부동산 중개인</p> <p>법률 제23호(1997.7.15) 제198조, 세계무역기구 협정 승인, 부속서 및 약속 양허표을 포함한 이 협정에 대한 파나마의 가입 의정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내법 조정 및 주식 중개인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그 밖의 조항 제정</p> <p>법률 제22호(1961.1.30)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전문 농업서비스 관련</p> <p>내각령 제362호(1969.11.26) 제4조 및 제16조, 영양학자 및 영양사</p> |

| | |
|--|--|
| | <p>법률 제34호(1980.10.9) 제5조, 음성 청력학자, 언어 치료사 및 청력검사자 또는 청각학 기술자</p> <p>법률 제3호(1983.1.11) 제1조 및 제8조, 수의학</p> <p>내각령 제196호(1970.6.24) 제1조, 의료활동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제약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의료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 수립</p> <p>결의안 제1호(1987.1.26), 이에 의거하여 기술보건위원회는 침술을 파나마의 의학 및 치의학 전문의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분류</p> <p>법령 제32호(1975.2.17) 제3조 및 제4조, 의료 보조원</p> <p>법률 제22호(1956.2.9) 제1조, 치과학</p> <p>장관령 제16호(1969.1.22) 제10조, 의료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및 치과 전문의에 관한 규정 및 일반의 및 의료 컨설턴트 직위 신설</p> <p>결의안 제1호(1983.3.14) 제3조, 치과학 전문의에 관한 규정 승인</p> <p>법률 제13호(2006.5.15) 제5조 치과 기공사의 직무 수행 관련</p> <p>법률 제66호(1947.11.10) 제37조, 제108조, 제197조 및 제198조, 보건법 승인</p> <p>법률 제1호(1954.1.6) 제9조, 면허 간호사에 대한 직업 안정성 부여 및 퇴직 간호사의 연금 규정</p> <p>법률 제74호(1978.9.19) 제3조, 임상실험실 근무자, 법률 제8호(1983.4.25) 제1조에 의하여 개정</p> <p>법률 제48호(1984.11.22) 제4조, 보건부 및 사회보장기금재단이 운영하는 임상실험실에 근무하는 보조원 및 지원요원과 그에 대한 규정</p> <p>법률 제47호(1984.11.22) 제7조, 제13조, 및 제15조, 물리치료 및/또는 운동학</p> <p>법령 제8호(1967.4.20) 제2조, 척추 치료사</p> <p>법률 제42호(1980.10.29) 제6조, 의료 방사선사, 법률 제53호(2009.9.18) 제5조에 의하여 개정</p> <p>법률 제13호(1984.8.23) 제6조, 공중보건기관에 고용된 의료기록 및 보건통계 전문가, 그에 대한 임금 체계 규제 및 그 밖의 규정 수립(의료기록 및 보건통계 전문가, 의료기록기사 및 보건통계기사의 보조인력)</p> <p>결의안 제1호(1985.4.15), 정형외과 및 핵의학 기술자</p> <p>결의안 제2호(1987.6.1), 신경생리학 기사, 뇌조영 기사 및 신경전도검사 또는 유발전위 기사</p> |
|--|--|

| | |
|--|--|
| | <p>법률 제36호(2010.8.2) 제6조, 작업치료 분야 인정</p> <p>결의안 제1호(1988.2.8), 작업보건기사</p> <p>결의안 제10호(1992.3.24) 제2조, 호흡기 치료 기사 또는 호흡기 헤일로(halo)치료 기사</p> <p>결의안 제19호(1991.11.12) 제3조, 보철교정 기술자</p> <p>결의안 제7호(1992.12.15) 제2조, 조직학 업무 및 조직학 보조 인력 및 세포학 보조 인력에 관한 규정</p> <p>법률 제27호(2009.5.22)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조직학 업무에 관한 규정</p> <p>결의안 제50호(1993.9.14) 제2조, 방사선 보건 기사</p> <p>결의안 제1호(1994.1.21) 제2조, 심혈관 관류 기사</p> <p>결의안 제2호(1994.1.25) 제2조, 의료정보기술 관련 기사 및 보조 기사</p> <p>결의안 제4호(1996.6.10) 제2조, 의료 방사선학 보조 기사</p> <p>결의안 제5호(1996.6.10) 제3조, 보건부에서 응급의료 기사 업무 인정</p> <p>결의안 제1호(1998.5.25) 제3조, 응급수술 전문의</p> <p>결의안 제2호(1998.5.25) 제3조, 인류유전학 기사</p> <p>법률 제24호(1963.1.29) 제35조, 국가제약위원회 설립 및 제약시설에 관한 규정</p> <p>법률 제45호(2001.8.7) 제11조 및 제20조, 화학자</p> <p>법률 제4호(1956.1.23) 제5조, 기술위원회 설립 및 이·미용사 업무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호(1963.1.31) 제2조에 의하여 개정</p> <p>법률 제15호(2003.1.22) 제4조 및 제5조, 정형외과적 기술 및 외상학</p> <p>결의안 제3호(2004.8.26) 제5조, 의학물리학</p> <p>법률 제19호(2007.6.5) 제17조, 수상인명 구조</p> <p>법률 제49호(2007.12.5) 제3조, 지역사회 개발자</p> <p>법률 제31호(2008.6.3) 제5조, 응급의료 기사 및 전문가</p> <p>법률 제28호(2008.5.22) 제3조, 조기자극 및 가족지향</p> <p>법률 제53호(2008.8.5) 제5조, 호흡치료사</p> <p>법률 제17호(2009.2.12) 제5조, 생물학</p> |
|--|--|

| | |
|------|--|
| | <p>법률 제52호(2009.9.18) 제5조, 노인학 기술 학위</p> <p>법률 제51호(2003.7.14) 제5조, 핵의학 전문가</p> <p>행정부령 제82호(2008) 제89조, 관광 안내 관련</p>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이 유보에 대한 조치에 열거된 직업을 수행하는 인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p>2. 상호주의 또는 거주 요건은 적절하게 적용된다.</p> <p>3. 전문 관광 서비스를 제외하고, 관광객 안내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파나마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p> |

| | |
|---------------|--|
| 23. 분야 | 사업서비스 |
| 하위분야 | 전문직서비스 – 건축가 및 엔지니어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15호(1959.1.26)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24조 법률 제53호(1963.2.4) 제4조 법령 제257호(1965.9.3)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21호(2007.6.20) 제1조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엔지니어 및 건축가 기술위원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인만이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는 그러한 자격증을 다음에게 부여할 수 있다.</p> <p>가. 파나마 국민</p> <p>나. 파나마 국민과 결혼한 외국 국민 또는 파나마 국민인 자녀의 부모인 외국 국민, 또는</p> <p>다. 파나마 국민이 동일한 조건에서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할권 내 허가를 받은 외국 국민</p> <p>2. 기술위원회는 또한 해당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을 갖춘 파나마인이 없는 경우, 기업이 외국 국민인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와 최대 12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업은 계약 종료 시 외국 국민을 대체할 자격을 갖춘 파나마 국민을 계약 기간 동안 고용하여야 한다.</p> <p>3. 기술위원회에 등록된 기업만이 파나마에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p> <p>가. 국제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업은 파나마에 본사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p> <p>나. 서비스를 공급할 책임이 있는 기업에 고용된 인은 파나마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

| | |
|--------|--|
| 24. 분야 |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 하위분야 | 통신 서비스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p>법률 제17호(1991.7.9) 법률 제5호(1995.2.9) 법률 제31호(1996.2.8) 행정부령 제73호(1997.4.9) 행정부령 제21호(1996) 규정 제JD-025호(1996.12.12) 규정 제JD-080호(1997.4.10) 국가와 벨 사우스 파나마 주식회사(BSC) 간 체결한 양허계약 제30-A호(1996.2.5) 국가와 케이블 와이어리스 파나마 주식회사 간 체결한 양허계약 제309호(1997.10.24) 행정부령 제58호(2008.5.12) 국가와 디지셀 파나마 주식회사 간 체결한 양허계약 제10-2008호(2008.5.27) 국가와 클라로 파나마 주식회사 간 체결한 양허계약 제11-2008호(2008.5.27)</p>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이동전화 서비스는 국가가 양허를 부여한 4개 사업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된다.</p> |

| | |
|---------------|--|
| 25. 분야 |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 하위분야 | 통신서비스 |
|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31호(1996.2.8) 행정부령 제73호(1997.4.9)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파나마 내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통신서비스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인만이 공급할 수 있다.</p> |

| | |
|---------------|--|
| 26. 분야 | 무역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 |
| 하위분야 | 사업장 내 소비를 위한 음료 제공 서비스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률 제55호(1973.7.10) 법률 제5호(2007.1.11) 행정부령 제26호(2007.7.12)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최근 공식 인구 조사에 따라, 파나마 내 어떠한 지역의 기존 술집 수가 인구 1,000명당 1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 내 술집 운영에 대한 허가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이다.</p> |

| | |
|--------|--|
| 27. 분야 | 레크리에이션서비스 |
| 하위분야 | 도박 및 배팅 서비스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파나마 공화국 정치 헌법(1972) 제297조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파나마 정부만이 파나마에서 사행성 게임 또는 그 밖의 도박 게임을 운영할 수 있다.</p> |

| | |
|---------------|--|
| 28. 분야 |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 하위분야 | 우편서비스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10.4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파나마 공화국 재정법 제301조, 법률 제8호(1956.1.27)에 의거 승인, 법률 제20호(1994.8.11)에 의거 수정 |
| 유보내용 |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파나마 정부만이 파나마에서 우편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p> |

| | |
|---------------|--|
| 29. 분야 | 항구 및 공항 |
| 하위분야 |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
| 정부수준 | 중앙 |
| 조치 | 법령 제7호(1998.2.10) 법률 제23호(2003.1.29) |
| 유보내용 |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 정부의 행정부는 국가 항구 및 공항을 위한 양허의 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양허권자에게 파나마 내에서 법률대리인을 임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